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훈 계 · 시 정 요 구

제 목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이행

기 관 명 충청남도 서산시, 예산군, 청양군

- 훈 계 대 상 자 ① 충청남도 서산시 ○○과 지방○○○○○ ○○○
(전 서산시 ○○과)
- ② 충청남도 예산군 ○○과 지방○○○○○ ○○○
(전 예산군 ○○○○과)
- ③ 충청남도 청양군 ○○○○과 지방○○○○○ ○○○
(전 청양군 ○○○○과)

내 용

지방○○○○○ ○○○은 2015. 1. 1.부터 2016. 7. 8.까지 서산시 ○○과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면 ○○리 일원 “단독주택 및 진입로 용도의 건축신고” 신고수리 실무담당자로, 지방○○○○○ ○○○은 2014. 1. 1.부터 2017. 7. 17.까지 예산군 ○○○○과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관광농원 개발계획” 승인업무 실무담당자로, 지방○○○○○ ○○○은 2013. 1. 1.부터 2017. 7. 31.까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업무 실무담당자로 각각 근무하였다.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르면 보전

이 필요한 지역과 난개발(亂開發)이 우려되어 환경보전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 면적이 “생산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은 7,500㎡ 이상, “계획관리지역”은 10,000㎡ 이상의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의 승인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의 승인 등을 받기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기관장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 등을 하거나 대상사업을 확정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다.

같은 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협의 내용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이를 해당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같은 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자는 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공사를 착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승인기관의 장은 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같은 법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개발사업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공사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1. 건축행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이행(서산시 ○○과)

서산시 ○○과는 2015. 9. 30. ○○면 ○○리 234-6 외 11필지에 단독주택 및 진입로 용도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신청인 건축주 ○○○ 외 1인)를 접수하였다.

동 소재지의 용도지역은 아래 [표1]과 같이 생산관리지역으로 사업계획 면적이 9,941㎡(건축부지 8,523㎡, 진입로 1,418㎡)로서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생산관리지역 7,500㎡ 이상)에 해당 된다.

따라서 서산시 ○○과는 건축허가(신고) 수리 전에 환경부장관(○○○○○ ○청)에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15. 11. 11.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건축허가(신고)를 수리하였다.

그리고 ○○과는 건축주로부터 2015. 11. 20. 착공신고서를 접수받아 같은 날 건축물 착공신고를 수리하고, 2016. 12. 29. 건축물 사용승인을 통보하였다.

[표1]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이행 현황

사업명	소재지	면적 (㎡)	용도지역(㎡)			건축허가 (신고)일	공사기간	
			농림	생산 관리	계획 관리		착공	준공
건축허가 (신고)	서산시 ○○면 ○○리 234-6 외 11필지	9,941	-	9,941	-	2015.11.11.	2015. 11.20.	2016. 12.29.

※ 서산시 제출자료 재구성

위와 같이 지방○○○○○ ○○○는 건축행위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이행과 관련하여 실무책임이 있다.

2. 관광농원 개발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이행(예산군 ○○○○과)

예산군 ○○○○과는 2015. 12. 4. ○○면 ○○리 45-1번지 외 10필지에 ○○ 관광농원 용도의 관광농원 개발계획신고서(신청인 ○○○)를 접수하였다.

동 소재지의 용도지역은 아래 [표2]와 같이 생산관리지역으로 사업계획 면적이 29,452㎡로서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생산관리지역 7,500㎡ 이상)에 해당 된다.

그리고 ○○○○과는 2015. 12. 7. 관광농원 개발계획신고에 따라 ○○과 등 9개 부서에 ‘관광농원 사업신청에 따른 관계법규 저촉 및 행위제한 여부 등 검토의견 조회’를 요청하였고, ○○과는 2015. 12. 10. “개발사업 규모가 생산관리지역에서 7,500㎡, 계획관리지역에서 10,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임”이라고 관련 법 검토결과를 회신하였다.

따라서 예산군 ○○○○과는 ○○ 관광농원 개발계획 승인 전에 환경부장관(○○○○○○○청)에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 관광농원 개발계획이 야영장, 글램핑장 및 쉼터, 어린이 야외놀이터, 탐방로 및 산림욕장 등을 설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등이 이루어지는 개발행위에 해당함에도, 종합 검토의견에 “본 관광농원 개발계획 승인의 중점사항인 산지전용(허가) 협의를 완료하였고 개발행위인 절·성토 및 일체의 공사행위가 수반되지 않는 관계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님”으로 2016. 1. 19. 관광농원(○○)

사업계획 승인 검토 보고하여 군수 결재를 득하고, 2016. 1. 19. ○○ 관광농원 개발계획 승인을 사업 신청자(○○○)에게 통보하였다.

그리고 ○○○○과는 2017. 9. 20. ○○ 관광농원 개발계획 준공(2016. 1. 19.~2017. 9. 19.)을 고시(예산군 고시 제2017-000호)하였다.

[표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이행 현황

사업명	소재지	면적 (㎡)	용도지역 (㎡)			개발계획 승인일	공사기간	
			농림	생산 관리	계획 관리		착공	준공
○○ 관광 농원	예산군 ○○면 ○○리 45-1번지 외 10필지	29,452	-	29,452	-	2016. 1. 19.	2016. 1. 19.	2017. 9. 19.

※ 예산군 제출자료 재구성

위와 같이 지방○○○○ ○○○은 관광농원 개발계획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이행과 관련하여 실무책임이 있다.

3. 개간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이행(청양군 ○○○○과)

청양군 ○○○○과는 2014. 8. 19. ○○면 ○○리 산119-8번지에 임야를 과수원으로 개간하기 위한 개간대상지선정신청서(신청인 ○○○)를 접수하였다.

동 소재지의 용도지역은 아래 [표3]과 같이 생산관리지역으로 사업계획 면적은 20,331㎡로서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생산관리지역 7,500㎡ 이상)에 해당 된다.

○○○○과는 2014. 8. 20. 개간사업선정신청서 접수에 따라 관련법 저촉여부를 ○○○○과 등 7개 부서에 ‘개간대상지 선정 신청에 따른 협의 요청’을 하였고, ○○○○과는 ‘환경정책기본법」에 관하여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여부

(검토의견 및 가부)’ 협의 요청서의 협의내용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공익용지의 산지로 사업면적이 30,000㎡ 미만으로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이 아님’으로 회신하였다.

○○○○과는 ○○○○과에 관련법 검토 요청 시 환경영향평가 등 해당 여부에 대하여 「환경정책기본법」이 아닌 「환경영향평가법」으로 법령을 정확히 기재하여 검토를 요청하지 않았다.

그러나 ○○○○과는 신청지역이 생산관리지역으로 개간사업 대상면적 20,331㎡가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생산관리지역 7,500㎡ 이상)에 해당되어, 신청인이 개간사업시행계획승인신청서 제출 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제출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간사업시행계획승인신청 시 반영 조건에 포함하지 않고 2014. 8. 27. 신청인에게 개간대상지선정신청서에 대한 회신을 하였다.

○○○○과는 2014. 10. 28. 개간사업시행계획승인신청서를 접수하고 개간사업시행계획 승인 전에 환경부장관(○○○○○○청)에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제출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15. 2. 12.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개간사업시행계획승인 통지를 하였고, 2015. 2. 13.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청양군 고시 제2015-00호)’를 하였다.

그리고 ○○○○과는 2016. 9. 8. 개간사업 준공(2016. 4. 21.~2016. 8. 31.)을 사업자에게 통보하였다.

[표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이행 현황

사업명	소재지	면적 (㎡)	용도지역(㎡)			시행계획 승인 고시일	공사기간	
			농림	생산 관리	계획 관리		착공	준공
개간	청양군 ○○면 ○○리 산119-8번지	20,331	-	20,331	-	2015.2.13.	2016. 4.21.	2016. 8.31.

※ 청양군 제출자료 재구성

위와 같이 지방○○○○○ ○○○은 개간사업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이행과 관련하여 실무책임이 있다.

조치할 사항 충청남도 서산시장, 예산군수, 청양군수는

[훈계] 위 관련자들을 훈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착공한 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등 적의 조치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행위에 대한 사업계획 등의 승인(허가) 업무와 관련하여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